자본 증자 문의

Q 비상장 주식회사(IFRS 적용)로 모 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액면가와 동일하게 자본 증가 있을 예정인데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예) 기존 주식 1,000,000주 @500원 = 500,000,000원
증자 주식 1,000,000주 @500원 = 500,000,000원
증자 후 2,000,000주 @500원 = 1,000,000,000원
금일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입금시 당사 주거래은행에 예치가 되고 주식납입을 확인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익일 당사의 법인계좌로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나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금일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차)별단예금 500,000,000원 /대)자본금 500,000,000원
익일 법인계좌로 입금시(등기부대비용 1,000,000 가정)
차)보통예금 500,000,000원 /대)별단예금 50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별단예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법인계좌로 입금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등기부대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카드 프로모션 관련하여

Q 카드사 프로모션으로 고객에게 10만원(세금포함) 선 할인 제공 후 9만원은 카드사에서 입금 받을 예정이며 1만원은 수수료로 처리 예정 입니다.
이때 수수료의경우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A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는 과세사업자이므로 귀사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카드사에게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면세가 아닌 당연히 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태풍피해 복구비용의 현금흐름 구분

Q 태풍피해로 인한 건물 등 원상복구 및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경비 등의 비용들에 대해 현금흐름 구분 시 영업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없을 것 같은데, 피해 복구에 따른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수선비 성격의 비용들은 단순히 영업현금흐름으로 보면 되나요?

A 수해에 따른 복구비용관련 비용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Q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의 6. 4자간 무역거래의 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거래를 시작하면서 검토 부족으로 을인 당사가 갑에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본 사유가 법인세법 제121조 6항, 법인세제과-1279(2019.9.18), 법인세제과-893(2018.7.23)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귀 법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국내사업자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거래를 하면 되는데,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법인세제과-893)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